

韓·中 비교 特許法(1)

目 次

- I. 總 則
- II. 實體規定
- III. 節次規定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I. 總 則

다른 나라의立法과 마찬가지로 中國專利法(이하 中國의 것은 모두 “專利”라고 한다)도 총칙 가운데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입법의 취지, 職務發明, 專利權의 移轉, 外國人의 特許出願(專利申請)등과 함께 개별적으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제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發明 · 實用新案 및 意匠의 概念

특허법에 발명의 定義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중에서도 별로 없다. 중국은 專利法實施細則(이하 간단하게 “細則”이라고 한다)의 제2조에 「專利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발명이란 제품·방법·그리고 그 개량에 대해서 나온 일종의 새로운 기술적 방안, 곧 기술적 사상인데, 기술이란 보통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일컬는다.

예컨대 중국의 “發明獎勵條例”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成果」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專利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技術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실천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專利法이 결코 추상적인 概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발명은 생산실천과 결합하여 기술분야중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實用新案(實用新型)에 대해서도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과 관련하여 실용적이고 적합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細則第2條). 이 정의에서 본다면 實用新案도 專利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해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特許權(專利權)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을 보호하는 것임에 비하여 實用新案은 제품의 형상·구조 그리고 이들의 조합만을 보호하고 방법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점은 한국의 實用新案法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품은 반드시 일정한 형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實用新案出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圖面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국의 專利法에 있어 實用新案에 대해서도 異議申請이 없으면 實體審查를 하지 않는 점은 한국의 實用新案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한국의 實用新案에 있어서는 拒絕査定에 대해서 審判請求를 하고, 심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심판청구, 그 다음에는 대법원에 속장을 제기할 수 있음에 비해서 中國專利法에는 拒絕査定不服에 대한 專利復審委員會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되므로 법원에 속장을 제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意匠(外觀設計)이란 「제품의 형상·도안·색채 혹은 그 모든 것을 조합한 것으로서 美感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공업상 응용이 가능한 새로운 設計를 말한다(細則第2條). 韓國의 意匠法상의 意匠의 概念과 거의 같다.

2. 秘密特許

비밀특허에는 보통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 첫째는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이 發明을 비밀에 부쳐서 비밀을 해제하기(解密) 전에는 專利權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둘째는 발명의 출원을 비밀로 유지하고 심사의 결과 특허요건이 존재한다는 査定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專利權은 부여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 것 등이 있다. 후자의 형태는 秘密保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은 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中國專利法에 있어서는 「發明創造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하여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다(第4條). 本條에 있어서 發明創造란 概念上에 있어서는 實用新案 및 意匠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용신안과 의장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發明創造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國防계통의 각 단위에 의해서 출원된 발명창조가 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專利出願은 국방과학기술 主務官廳이 설치한 전리기관에서受理되며 (北京에 國防科工委에 속하는 專利分局이 설치되어 있다), 專利局은 당해 기관의 심사의견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細則第8條). 또 국방계통의 각 단위 이외의 자연인이나 法人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연관된 발명창조에 대해서 專利出願을 할 경우에는 專利局은 출원을 수리한 후 秘密保持審查에 필요한 출원을 國務院의 관계주무관청(우리나라의 部, 廳에 상당한다)에 송부하면 관계주무관청은 이것을 수리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심사의 결과를 專利局에 통지해야 한다. 출원된 발명창조가 秘密保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될 경우에는 專利局은 그것을 비밀출원(秘密出願)으로 취급하고 나아가 出願人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만 한다(細則第9條).

秘密保持는 시한적인 것으로서 國防 부문 혹은 여타의 主務官廳은 비밀보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專利權의 존속기간 중에는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받지 않는다.

現行 한국 특허법은 秘密保持의 특허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가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밀 특허제도의 일부목적은 달성되고 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군사기술공여와 관련하여 한·미간 비밀특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3. 職務發明과 그 權利의 귀속

中國專利法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속단위의 임무수행중에 완성되었거나 또는 주로 소속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해서 완성된 職務發明創造의 專利出願權은 당해 단위에 귀속한다. 非職務發明創造의 專利出願權은 발명자 또는 意匠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專利權이 부여되는 경우 全民所有制 단위에 의한 출원에 관련한 專利權은 당해 단위의 소유가 되고, 集團所有制단위 또는 개인에 의한 출원에 관련된 專利權은 당해 단위 또는 개인의 소유로 돌아간다」(第6條①項). 「임무의 이행과정 중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①「소속단위의 임무이행 중에 완성된 발명 ②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외에 소속단위로부터 특별히 명령이 내려진 임무의 이행중에 완성한 발명 및 ③ 위의 ① 및 ② 임무에 관련된 발명창조가 퇴직, 휴직 혹은 직장변경 후 1년이내에 완성되었을 경우를 말한다(細則第10條). 제3항은 韓國의 特許法 17條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한 「特有」의 概念을 설명한다. 全民所有制單位의 재산은 모두가 國家재산으로 그 專利權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專利權의 귀속자체와 경영권을 분리하고 있으며, 당해 全民단위는 전리권과 관련하여 경영관리권, 實施權, 타인에로의 實施許諾權 및 사용비의 지배권을 가진다.

中國 국내에 설치된 外資와 합병기업에 대해
서는 중국의工商行政管理機關의 체크(Check)
와 등록을 거치면法人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중국의 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韓國의 특허법에는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 귀
속시킨다는 원칙이 채용되고 있지만, 형식상으
로는 서로 다르나, 예약승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는 中國法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되고 있다.
발명자가 취득하는 보상금의 액수는, 평균임금
수준과 대비해 보면, 중국법에 의한 경우의 보
상금이 훨씬 크다. 중국법상의 보상금은 등록시
의 것 및 그 발명창조의 보급, 응용의 정도에
따라 그것에 의해 생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
되는 實績補償에 의거하고 있다(第16條). 登錄
보상은 발명창조는 200元, 實用新案 및 意匠은
50元이라고 法律로 정해져 있다(細則71條). 實
績보상에 대해서는, 專利權을 「特有」하는 단위
가 스스로 實施하는 경우에는 발명창조 또는 실
용신형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후의 이익의 0.5~
2%, 의장에 대해서는 0.05~0.2%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어지며, 또 발명창조를 다른 단위에
實施許諾을 한 경우는 세금공제 후의 實施料 수
입의 5~10%가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細
則第71~73條).

4. 共同發明과 委任發明의 권리귀속

中國專利法의 原則은 다음과 같이 두개 이상
의 단위가 협력해서 완성했거나 혹은 한 개의
단위가 다른 단위로부터의 연구, 설계의 위임을
받아서 완성한 발명창조는, 特約이 없는 한, 출
원권은 受任단위 또는 공동발명을 한 단위에 귀
속한다. 出願에 대해서 專利權이 부여될 경우
專利權은 出願한 단위에 의해 所有 또는 特有된다.
따라서 발명창조의 권리귀속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特約에 의해서 결정한다. 特약이 없는
경우, 委任단위는 차금을 제공하였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출원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위임단위는 차금을 제공함으로써 발명의
완성에 공헌을 하였으므로 통상의 경우에 위임
단위는 受託단위에 대해서 實施료를 지불할 의
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韓國 特許法에는 共同發明의 특허출원에 공동
발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特37)하
고 있지만, 위임에 의한 발명의 권리귀속에 대
해서는 특허법내용중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당사자의 계약에 맡기고 있다.

5. 權利의 讓渡

專利出願權과 專利權의 양도는 권리주체의 변
경형식의 일종으로서 일체의 권능이 이전된다.
이 점이 實施許諾과 다른 점이다. 이외 양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등의 승인 및 등록, 공고가
효력요건으로 되지만, 實施許諾에 있어서는 이
와같은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第12條). 그러나
書面에 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양자가 공
통된다.

「全民所有制單位에 의한 專利出願權 혹은 專
利權의 양도는 상급主管機關의 승인을 요한다.
中國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 대해서 專利
出願權 또는 專利權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國務
院의 관계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專利출
원권과 專利權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며, 讓
渡는 專利局의 등록과 공고를 거쳐서 效力を 發
生한다(第10條).

전민소유제 단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專利權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全民所有制 단위는 專利權을 持有하고 있
는 데 지나지 않으며, 경영권 등의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
한 上級主管機關이란 大學의 경우에는 省高教廳
혹은 市高教局이 있고, 中國科學院 소속의 각
연구소의 경우에는 각 지방에 分院이 있다.

無體재산에 속하는 출원권과 專利權을 양도할
때에는 제3자에게 이것을公示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및 공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등록과 공고
이전의 양도계약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무효이
다.

韓國의 특허법에는 양도 이외에 專用實施權의
설정에 있어서도 등록이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
다(特56條①2). 또 通常實施權의 허락은 의사표
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의할 필

요는 없다는 점이 中國法과는 다른 점이다(特78). 더구나 通常實施權의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중국법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特62條④). 공동발명의 持分讓渡에 있어서 共有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있다(特15條③).

6. 實施의 概念

(1) 實施의 정의

專利法에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專利權의 效力규정 가운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本條第14條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專利權者의 허락 없이 그 專利를 實施할 수 없다. 즉 生산경영목적으로 專利製品을 제조·사용·판매해서는 안되며, 그 專利方法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第11條).

여기서 生산경영의 목적이라 함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韓國의 특허법에 있어서 「業으로」의 개념과 거의 같은 뜻이다.

① 製品發明의 實施

여기에서 말하는 제품은 권리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제품은 그 제조방법이나 제조지역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보호대상이 된다. 그 제품의 사용외에, 판매도 보통의 판매 뿐만이 아니라, 상점의 전열대에 전열하는 것 등도 실시에 포함된다.

또 條文의 문맥(文理)에 의하면 專利權者에게는 수입을 금지하는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專利權者는 앞에서 기술한 판매권에 의하여 제3자가 수입한 제품의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수입권을 승인했을 경우의 稅關에 의한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專利法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입은 할 수 있으나 판매할 수는 없다」는 원칙은 일종의 便法이다. 이점은 「輸入」을 「實施」의 概念에 포함하고 있는 韩國의 특허법과는 다른 점이다(第45條).

② 方法 發明의 實施

專利法에 있어서 專利方法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해서 이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며, 이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방법에 의해 직접 생산된 물건이 전리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것을 獨立클레임에 기재하고 방법클레임과 함께 출원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細則第35條7項). 그 물건이 전리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물건의 제조, 판매등은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의 特許法에 있어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方法의 特許效力은 그 方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 까지 미치며(特45條①), 더욱이 그 물건이 특히 출원前에 韓國內에 있어서 公知의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히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特45條②), 專利法에 의한 專利方法의 효력보다도 확대된 것이다.

또 專利方法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는가 아닌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제품의 판매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의 보호만 하고 화학물질자체를 보호하지 않는 專利法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만약 專利權이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제조방법에 의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단위 혹은 개인은 그 제조방법의證明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侵害者라고 주장하고 있는 者에게證明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7. 實施許諾契約

本條 第14條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타인의 專利權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專利權者와 書面에 의한 實施許諾契約을 체결하고 實施料(專利使用費)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시권자는 지정된 계약자 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그 권리의 실시를 허락할 권한을 갖지 않는 다』라고 되어 있다(第12條). 本條 마지막 귀절의 취지는 실시권자는 再實施를 허락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외국인(專利權者)은 중국에 아무런 지장없이 技術輸出을 할 수가 있다.

다만 專利法은 제실시허락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며, 特約에 의해서 실시권자에 대해서 제실시의 허락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8. 出願公開後의 보상금 請求權

『發明專利公布, 즉 公開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單位 혹은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第13條). 실제로 여기에서는 「臨時保護性의 權益」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만약 실시자가 이 권리은 아직 成立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요금을 지불을 거절해도 좋으며, 출원인은 증거를保留해 두고 권리를 부여받은 후 1회 더 요구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특허법에서는 出願公開後 서면경고를 한 경우에는 出願公告時까지의 侵害行爲에 대해 公告後에 出願人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特91條의 2①). 여기서 한국의 특허법과 다른 점은 중국에서는 권리의 설정 후 實施者가 여전히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불을 거절할 때 특허권자는 앞에서 기술한 專利管理機關에 調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재판소에 訴訟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리관리기관은 조정을 한 경우에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적당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가 권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9. 裁定實施權

일반적으로 國益상의 필요가 있을 때 政府 등이 강제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의 出願法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중대한 발명이나 그 보

급·응용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國務院의 관계주무관청 및 省, 自治區, 直轄市人民政府는 국가계획에 기초해서 당해부문내의, 또는 관할지역의 全民所有制單位가 持有한 중요한 발명창조의 專利의 實施를 지정한 단위에 대해서 허락하는 뜻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실시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專利權을 持有하는 단위에 대해서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第14條).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① 발명은 반드시 중대한 것, 또는 국민경제에 대해서 중요한 작용이 있는 것, ② 결정권은 각 專業部委와 区, 省, 직할시人民政府에 있다. ③ 實施權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全民所有制단위에 한하며, 중국 국내의 합법企業과 外資企業에 있어서는 그 條文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특허법에서도 公共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特50), 실제로 운용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10. 中國에 있어서 外國人の 專利出願과 代理

(1) 중국에 있어서 外國人の 專利出願

중국에 실제적 소재지 혹은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기타 외국의機構는 어떠한 方法으로 중국에 專利出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권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아래의 3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上記의 외국인등도 권리출원할 수 있다.

① 그 者의 本國과 중국간에 2國間協定이 있는 경우

② 上記兩國이 締約國으로 되어 있는 國際條約이 있는 경우

③ 또는 互惠의 원칙에 의한 경우이다(第18條).

이것은 중국에 실제적인 소재지 혹은 영업소

를 갖고 있지 않는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기구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지는 요건이다. 중국 국내의 외자기업, 합병기업 및 각 기업에 속해 있는 외국인은 중국단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리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專利法도 파리조약의 기본원칙 및 共通規則을 참고로 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기술한 실제적인 소재지, 혹은 영업소도 파리조약을 참고로 해서 해석된다. 실제적인 소재지란 어느 정도 장기적인 事實狀態를 가리키며, 영업소도 事實과 합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실제로 생산 또는 상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단지 연락만을 위한 사무소는 영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소의 해당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는 중국의工商行政部門이 판단한다. 해설에서 미루어 본다면 韓國 특허법상의 영업소의 법이 보다 광의의 형태이다.

영리목적을 갖지 않는 사무적인 기구도 영업소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 점은 中國專利法上的概念과 다르다.

또 중국에 실제적인 소재지 혹은 영업소를 갖지 않은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기구에 의한 전리출원에 대해서 專利局이 異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國籍證明書
- ②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기구의 本部의 소속지 증명서류

③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기구의 본국이 그 나라에 있어서 중국의 公民 또는 단위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 의해 전리권, 기타 전리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書面(細則34).

(2) 中國에 있어서 外國人의 代理

(案) 第63回 發明教室 (内)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們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5月中第63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 1989年 5月 13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풍림빌딩 7층)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 提供)
- ◎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

중국에 실제적인 소재지 또는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는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기구가 앞에서 기술한 요건을 갖추어서 중국에서 전리출원등을 하는 경우에는 中國 國務院이 지정한 專利代理機關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第19條). 현재까지 國務院이 지정한 외국인을 위한 대리기관으로는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北京), 上海專利事務所,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홍콩) 및 永興公司등의 네가지가 있다. 외국인 출원자는 이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위임할 수 있다.

中國國內의 외자기업 혹은 합병기업은 專利出願에 있어서 중국 국내의 단위와 똑같은 권리 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임할 필요없이 직접 專利局에 출원할 수 있다(第19條2項).

11. 中國人의 外國에로의 特許出願

중국의 단위 혹은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發明創造를 외국에 전리출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中國專利局에 전리를 출원한 후 國務院의 관계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고, 국무원이 지정하는 專利代理機關에 위임을 해야만 한다」(第20條). 그 목적은,

- ① 國內에서 先願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 ② 그 발명이 중대한 발명인지 어떤지, 비밀을保持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를 주무관청이 검사(Check)할 수 있다.

③ 중국에서는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상은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에 관한 규정이며, 중국인이 외국에서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方策을 制定했다. <계속>